

메탄저감제의 기준(제8조제1항관련)

1. 메탄저감제의 기준

- 가. 메탄저감제는 국내 가축사양 실험을 통해 메탄저감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그 확인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- 나. 메탄저감제는 관행적인 사료 급여(대조구) 대비 10% 이상 유의적인 메탄저감효과가 확인되어야 한다.
- 다. 메탄저감제를 사용할 경우 가축의 건강 및 생산성(증체율, 유량 등)에 유의적인 저하가 없어야 하며, 최종 축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.
- 라. 메탄저감제는 국내에서 분석가능한 지표를 제시해야 하며, 정량분석을 통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야 한다. 다만, 식품추출물 등으로서 정량분석이 가능한 지표물질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 사료공정심의 위원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.
- 마. 인정물질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, 재평가하여 효능의 조정 또는 물질의 취소가 가능하다.
- 바. 평가수단 :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호흡대사챔버(Respiration Chamber), 그린피드(GreenFeed) 장비에 의한 대상 축종의 국내 실험 결과만 인정하며, 타 축종의 실험결과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. (예시: 한우 실험결과는 한우만, 젖소 실험결과는 젖소만, 염소 실험결과는 염소만 인정)
- 사. 실험기관 : 바.에서 설명하는 장비(또는 실험방법)에 의한 실험이 가능한 대학, 연구소 등으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인정하여 공고한 실험기관. 다만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사 실험실 등을 활용하여 자사 제품을 평가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.
- 아. 메탄저감제는 원료명이 아닌 제품명으로 한다.

2. 메탄저감제의 공고 및 실험기관 사후관리

- 가.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메탄저감제가 설정·변경·삭제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아래 표와 같이 공고한다.

번호	사료의 종류	사료의 명칭	제품명	사료내 첨가기준	사용축종	비고
1						
2						

- 나.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메탄저감제 실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험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.
- 다.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나.에 따른 점검결과 실험의 정확성 및 신뢰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